

#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125호

###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11월 13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11.13. ~ 2024.11.26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김인선	1965.00.20.	0178230274100005063	₩3,824,300	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6 번길
2	방동국	1962.00.01.	0178200274100005904	₩31,860,0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 8 길
3	박민상	1967.00.20.	0178200274100004081	₩28,674,000	경기도 연천군 전은길
4	유한회사 지니	161414-0000570	0178200274100003300	₩12,133,800	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 2길 107, 303호
5	정연호	1948.00.03.	0178200274100005925 0178200274100005926	₩28,674,000 ₩28,674,000	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
6	박광미	1971.00.13.	0178200274100004082	₩31,860,000	대전광역시 동구 효천 1 길
7	강석규	1964.00.03.	0178200274100005910	₩31,860,000	세종특별자치시 장척로
8	유용근	1967.00.03.	0178200274100005907	₩31,860,000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 번길
9	강남규	1987.00.14.	0178200274100004271	₩2,547,000	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
10	최득수	1981.00.20.	0178240274100000686	₩770,000	충남 서산시 한마음 11 로
11	이상배	1969.00.10.	0178200274100006423	₩6,690,600	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 36 번길
12	나경민	1983.00.01.	0178200274100003754	₩19,116,000	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
13	원호민	1973.00.10.	0178200274100004290	₩9,558,000	충남 공주시 유구읍 서모곡길
14	주식회사 누리텔	160111-0534902	0178200274100010330	₩5,797,500	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100, 503 동 405 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김수옥	1962.00.27.	0178200274100004287	₩19,116,000	전북 임실군 오수면 삼일로
16	정훈기	1974.00.08.	0178200274100004285	₩7,080,000	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34 번길
17	홍승혁	1976.00.25.	0178200274100004286	₩4,425,000	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97 번길
18	조종렬	1960.00.10.	0178200274100005909	₩31,860,00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 가길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5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